# 2023년 효도권 지원시업 추진 계획

O 효도권 지원사업을 통해 군, 주민, 협약업소가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도모

# **I**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

- □ 추진근거
  - O 노인복지법 제4조(노인복지증진의 책임)
  - O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(2019. 04. 12. 전부개정)
- □ 사업개요
  - O 기 간: 연중
  -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)
    -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  - O 사업비: 2,437,060천원(군비 100%)
  - 사업내용 : 1인당 월 15,000원 상당의 효도권을 분기별 지원
  - O 사용장소 :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·미용업소
  - O 추진방법

(읍·면) 지원대상자 조사·결정→ (군)효도권 제작 및 사업비재배정→(읍·면) 효도권 배부→(읍·면)명부관리→효도권사용→(읍·면) 목욕 및 이·미용비 정산

# Ⅱ 세부 추진계획

### 1. 지원대상자 및 기준

- □ 지원대상 : 만 65세이상 노인(2023년 : 1958년생)
  - O 지급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  - O 지급제외 대상 : 시설입소자, 3개월 이상 미거주자·장기입원자
  - ※ 효도권 지급 제외시설 : 12개소
    - 정신요양 및 장애인시설(3) : 시일건강타운, 은혜의 집, 사랑의 종의 집
    - 노인복지시설(9) : 프란치스꼬의집, 샬롬의집, 영락양로원, 가나실버홈, 인예지요양원

효나눔요양원, 사랑나눔요양원, 목란꽃피는집, 신세계요양원

### □ 지원기준

- O 지원내용 : 분기별 지급 ( 45,000원/분기별/1인당 )
  - 분기별 13매 (효도권 5,000원권 8매, 1,000원권 5매)
- O 최초 지원시기 : 2023년 기준 1958년생
  - 만 65세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
- O 지급대상자 전입 시 처리
  - 전입자는 전입일자가 속한 날의 **다음달부터 지급**
  - ※ 장성군 관내 전입자는 반드시 전출지 수령 여부 확인
  - 사망자, 전출자는 확인즉시 지급제외(단, 기지급자는 회수불필요)

### □ 지원대상의 조사·결정

- O 읍·면장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조사·결정
- O 명부출력기준일: 매분기초 1일 기준

### □ 지원방법

- 군에서 효도권을 제작하여 매분기말 읍·면장에게 배부
  - 제작시기 : 3, 6, 9, 12월말 제작
- O 매분기 첫달에 대상자에게 본인 서명 또는 무인날인 후 교부
  - 배부시기 : 1, 4, 7, 10월 20일까지 교부
- O 전입자는 변동일 다음달에 본인 서명 또는 무인날인 후 교부
  - 배부시기 : 변동일 다음달 10일까지 교부

### 2. 효도권 사용 및 정산

- □ 효도권 협약 및 사용
  - 사용업소 : 협약체결한 관내 목욕업소 및 이·미용업소 "효도권 사용업소" 표지판 부착
  - O 협약 체결(붙임1 협약서 서식)
    - 대 상 : 관내 효도권 후불적용 목욕, 이.미용업소
    - 체결시기 : 최초 협약체결 후 협약내용 변동시까지
    - 협약기간 : 사용업소 신청취소 및 협약취소시까지
    - 협약내용 : 효도권 가액, 이용방법, 정산방법 등
  - 사용기한 : 효도권에 정한 기한(2023년 12월 31일까지)
  - O 사용방법 : 목욕 및 이·미용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을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부담
  - O 무자격자 사용 금지 : 지원 대상 본인만 사용 가능
  - O 목적 외 사용 불가 : 물품 및 현금 교환 절대 불가(목욕용품, 타월, 우유, 두유, 기타 목욕 및 이.미용과 관련없는 물품 등)

- □ 목욕 및 이·미용비의 정산
  - O 목욕 및 이·미용비를 다음 달 5일까지 읍·면사무소에 청구
  - 목욕, 이.미용업소 ⇒ 회수 효도권 및 청구서 제출
    - 효도권 표시된 금액별 정산 청구
  - O 읍·면에서는 청구내역 확인 후 월 2회이상 각 업소별 계좌입금
  - 읍·면 ⇒ 효도권 청구내역 접수증(대장) 발급 확인 처리
    - ⇒ 월 2회이상 수시 계좌입금
  - O 2023년 12월 25일 이후 청구된 효도권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.

### 3. 지도점검 및 홍보 계획

- □ 효도권 지도점검
  - O 점검주기: 반기별 지도점검(상, 하반기)
    - 군 : 읍 면 (효도권 수불관리 등)
    - 읍·면 : 읍·면 자체 점검 및 협약업소 현지점검
  - O 점검방법: 점검표에 의한 협약업소 현장점검
- □ 부정사용 사례
  - 65세 미만의 대상자가 아닌 자의 이용권 사용
  - O 이동수단을 제공받고 이용권 지불
  - O 목적 외 사용(목욕 및 이·미용 용품 교환/현금거래 등)
  - 12월 효도권 사용기한 종료 후 목욕권, 이.미용권 교환 등
- □ 이용권 부정사용 대책 마련(조례에 환수처리 근거 마련)

####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

제10조(환수처리 등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1. 이용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2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- O 부정청구 적발 시 조례에 근거, 환수 조치, 협약취소 등
- O 이용권 수령대장 작성 시 배부된 이용권 번호, 서명 기재 철저
  - 대상자 추적하여 환수 및 지급 제외 등 제재조치

### □ 홍보계획

#### [ 군 ]

O 반상회보 게재 및 언론사 홍보

### 【읍·면】

- 주민홍보 : 이동장 회의, 마을방송, 경로당 게시판 등 홍보실시
  - 효도권의 가액, 사용방법, 사용기한, 부정사용 등 홍보철저
- 업소홍보 : 사용기한, 청구방법, 부정사용 청구시 제재 등

### 4. 효도권 및 사용업소 표지판 제작(안)

- O 효 도 권
  - 재질·사이즈: 명함용지, 9cm X 5cm(명함사이즈)



#### 유의사항

- 효도권은 장성군과 협약된 목욕업소 및 이 · 미용업소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효도권은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목욕 및이 미용서비스 외 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효도권을 부정사용 또는 부정청구 적발 시 조례에
  근거 하여 환수조치 및 협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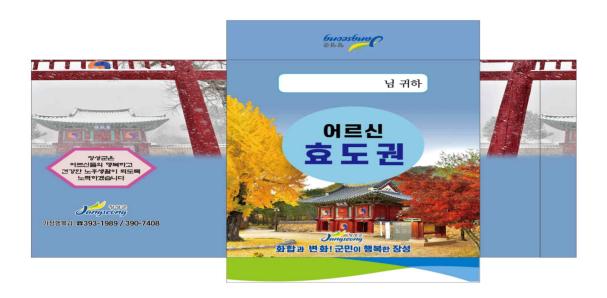
#### 유 의 사 항

효도권은 장성군과 협약된 목욕업소 및 이·미용업소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효도권은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목욕 및 이 · 미용서비스 외 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

효도권을 부정사용 또는 부정청구 적발 시 조례에 근거 하여 환수조치 및 협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O 효도권 봉투

- 샤일: 10.5cm×12cm



O 사용업소 표지판 : 신규협약업소 설치

- 재질·사이즈: 아크릴, 300cm X 2,000cm

# Ⅲ 업무 흐름도

### 지원대상자 조사결정

- 읍 · 명
- 분기초 1일기준 대상자 명부 출력 후 제외자 명부정리



### **효도권 제작 및** 사업비 재배정

- l• =
- 전분기말 제작 및 읍·면 배부
- ▶ 사업비 재배정



### 효도권 지급

- 읍 · 명
- 당해분기 20일이내 대상자에게 배부

#### 명부관리

- 읍 · 면
- 분기별 배부 명부 관리 및 보관



#### 효도권 사용

- 관내목~및이마음업소
- 효도권을 이용하여 사용기한 내 괜내 목욕 및 아미용업소에서 사용



### 목욕 및 아미왕비 정산

- 읍 · 명
-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업소청구에 따른 월별 정산 및 보고

## Ⅳ 사 업 비 : 2,437,060천원(군비 100%)

- □ 산출기초
  - 효도권 지원금 : 2,394,000천원(월15,000원×12월×13,300명)
  - 효도권 제작 : 34,580천원(13매× 4분기×13,300명)
  - 효도권 봉투 제작 : 7,980천원(150원×13,300명×4매)
  - 효도권 사용업소 표지판 제작 : 500천원(50,000원×10개업소)

# Ⅴ 행정사항

- □ 지원대상자 명부 엑셀 작성(붙임 5) / 비치
- □ 효도권 수불대장 작성 (붙임 7) / 비치
- □ 효도권 배부
  - O 배부일시 : 분기초 20일까지
  - O 배부매수: 13매/1인/1회
  - O 배부대상 : 본인 및 배우자에게만 지급 원칙, 가족 방문 시에는 본인 및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면 배부 가능
    - ※ 요양보호사, 이웃주민 등 배부 불가(직접전달 원칙)
  - O 효도권 수령대장 작성(배부된 이용권 번호, 서명 기재 등 철저)
- □ 목욕 및 이·미용비 정산
  - O 청 구 : 관내 협약업소
    - 시 기 : 매월 5일까지
    - 구비서류 : 청구서, 사용한 효도권, 사업자 등록증, 통장사본
  - O 지 급: 청구내용 확인 후 계좌입금
    - 시 기 : 매월 2회 이상(읍·면 실정에 따라 수시 지급 가능)
- □ 효도권 배부 및 분기 정산 결과 보고 : 분기 10일까지(별도 서식)

- □ 효도권 반남 : 효도권 잔량은 <u>2024. 3. 31.한 자체 폐기 후</u> <u>폐기검수조서 군 제출(2024. 4. 10.한)</u>
  - O 폐기검수조서 작성 후 결재 후 폐기(사진첨부)

# VI 기대효과

- O 장성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 기여
- 노인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복지 체감온도 향상
- O 관내 업소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도모